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-122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. 09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  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,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 
제로화 추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물품 제작·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  
품 제로화 및 구민 재활용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  
(안 제2조제1항)
- 나. 조례에서 정하는 구민의 대상 한정(안 제5조제1항)
- 다.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 근거 조항  
신설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- 라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(안 제11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2)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3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8. 9. ~ 8. 29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한다) 제4조제2항”을 “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”를 “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교육·홍보)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, 다회용 컵, 냄비 받침, 칫솔, 부채, 자, 달력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규칙제정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구 재활용추진협의회(이하 "협  
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 
수 있다.

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과  
태료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 
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 
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13조(규칙제정) (생략)

-----  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교육·홍보) ① 구청장은 구  
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  
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 
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  
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, 다  
회용 컵, 냄비받침, 칫솔, 부  
채, 자, 달력, 컴퓨터용 마우스  
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  
부할 수 있다.

<삭제>

제13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신설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 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황인화 (☎ 3153-9215)